

# 『의료서비스의 질』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魯 仁 喆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시** 장개방 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부자나라들의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가입이 곧 선진국을 의미하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환경, 의식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과 변화의 새로운 시작의

계기일 뿐이다. 특히 그동안 선진화의 발목을 걸고 있던 제도, 각종 규제, 차별적 조치와 의식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출범과 함께 OECD 가입은 우리의 낡은 제도와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제 국민소득 1만달러의 고비를 겨우 넘게 된 우리에게는 힘겨운 부담이 되고 또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WTO체제와 OECD가입에 따라 어떤 무역질서를 요구받을 것인가. 그 질서는 한마디로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또는 하나의 시장단위에서 서로 무한경쟁하는 형태가 된다. 즉,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질서, 더 나아가서는 환경기준, 노동기준, 투자, 경쟁정책, 기술, 정보기술 및 소프

트웨어 등에서도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신질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가간 제한적 경쟁이나 정부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자유경쟁조건이 보건의료분야에도 요구되므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의료계에게는 엄청나게 힘겨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실은 아직 여러가지 제도적인 정착을 확고히 다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테면 불합리한 보험수가체계에 대한 공급자의 불만, ‘3시간 대기 3분진료와 불친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불만,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진료왜곡에 의한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증가 등

공급자·수요자 공히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료기술 및 병원경영기술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수가의 구조적 조정에 의해 보험수가는 현실화하되, 전체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현행 비용조장적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비용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선불지불보상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몫도 있겠으나 선불지불보상방식이 채택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환자들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한층 더 강화·확산해야 한다.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의 강화이다. 1차의료기관은 국민건강에 대한 파수꾼(gatekeeper)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2차의료기관은 특수 기능을 갖는 전문병원이나 장기치료 환자를 위한 장기 요양시설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3차의료기관은 의학교육, 진료, 의학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의학발전은 물론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하위 의료기관에 확산시키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병원관리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병원관리정보체계(HMIS)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섯째, 법령의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면세조치와 시설·장비구입에 대한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의 중

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WTO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병원의 의료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의료서비스의 시장 개방은 선진국과의 제도 및 기술적인 조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여 의료시장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자칫 비효율적인 의료산업 운영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병원경영 전문가의 양성, 병원단위의 규모 경제성, 원가절감, 시설과 고가장비의 중복투자 배제 등을 위한 경영마인드 전략과 의료기관의 내부적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